

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(안)

의안 번호	224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1995. 3. 16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내무부로부터 지방자주재원 확충의 일환책으로 전국을 단위로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
-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라 급증하는 지방재정수요에 대응할수 있는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전국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발행주체 :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
- 판매지역 : 전국
- 발행형식 : 즉석식 500원권
- 발행규모및 수익 : 1,000억원 (매출액의 30%, 300억원)
- 발행시기 : '95. 7. 1.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11조의 2
- 복권발행조정위원회규정(국무총리훈령 제306호)
-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 규칙 (내무부령 제585호)

전국자치복권 발행계획(안)

□ 발행의 필요성

- 지방자치실시에 따라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수요가 늘고 있으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 방법의 일환으로 자치복권을 발행하여 조성된 수익금으로 공익사업 및 지역개발기금에 충당하고자 함

□ 추진경위

- '91.12.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발행근거 마련 (11조의 2)
- '93. 3. 지방자치복권 발행승인기준등에 관한규칙(내무부령) 제정공포
- '93. 8. 청와대 요청에 따라 『자치복권』 발행유보
- '95. 1.13 청와대 업무보고시 『지방자치복권 발행검토』 보고

□ 발행계획

- 발행주체 : 전국 자치복권 발행 행정협의회 (15개시·도)
- 판매지역 : 전 국
- 발행형식 : 즉석식 500원권
- 발행규모 및 수익 : 1,000억원 (대출액의 30%, 300억원)
- 발행시기 : '95. 7. 1.

□ 추진 계획

○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구성

- 명 칭 : 자치복권발행 시도 행정협의회
- 위 원 : 시도 기획관리실장
- 사무실 : 대한지방재정공제회 내
- 임 원 : 회장(1인), 부회장(1인), 감사(1인), 간사(1인)

※ '95. 3.31까지 규약(안) 및 복권 발행계획 의회 의결·고시

○ 사무대행기관 선정

- 계약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경쟁입찰로 대행기관(은행) 선정

※ 도안, 판매, 당첨금 지급, 자금관리등

○ 업무의 위탁

- 위탁기관 :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
- 방 법 : 협의회 간사(1명) 직원(2명) 임명(우선 기존조직 활용)

- 소요예산 및 조치계획 : 연간 30백만원 (복권판매 수익금으로 충당)

○ 수익금의 배분

- 당첨금 (50%) : 발행승인시 결정
- 판매수수료 (10%) : 발행기관에서 매년 결정
- 대행수수료 (3%) : 대행기관과 계약체결시 결정
- 발행비 (7%) : 조제계약체결시 결정 단, 광고선전비는 발행계획에 포함
- 수익금 (30%) : 당첨금, 제비용을 뺀 예상수익액

※ 수익금 배분 : 전국 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 규약에의함
(판매금액, 시군구수, 인구수 감안 배분)